

일반구매조건

1.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1.1 본 일반구매조건은 공급업체의 모든 물품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기타 약관, 특히 공급업체의 표준계약은 적용이 없다. 이는 개별 사안에 있어서 호이트가 그러한 약관이나 표준계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주문 물품/서비스를 조건 없이 수락하였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본 일반구매조건은 호이트가 상인, 공법인이나 공적 펀드와 거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2 구매 주문 및 그 수락(이하 “주문 확인서”)과 계약 이행을 위한 호이트와 공급업체간의 합의 일체는 서면으로 행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팩스 전송, 원격 전송 또는 이메일도 서면 형식의 요건을 충족한다.

1.3 공급업체는 주문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주문 확인서를 회송함으로써 주문을 수락한다. 이러한 주문수락이 없는 경우 호이트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다.

2. 인도, 인도장소 및 납기 불준수의 효과

2.1 합의된 납기는 구속력을 갖는다. 납기 미준수나 지연을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이를 즉시 호이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기 준수 여부는 호이트의 사업장 또는 주문서 상에 물품 인도/서비스 이행 장소로 지정된 곳(이하 “이행지”)에서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 완료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2.2 일부(분할) 납품을 위해서는 호이트의 동의가 요구된다.

2.3 인도 또는 이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호이트는 인도가 지연된 1주일 당 공급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에 상당하는 정률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금액은 계약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청구(이행 대신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호이트는 이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공급업체는 실제 손실이 이보다 현저히 적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권리를 보유한다.

2.4 물품 또는 서비스의 지연된 제공에 대해 호이트가 이를 조건 없이 수령하더라도 이는 물품 또는 서비스 인도 지연으로 인한 자신의 여하한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교체 부품 공급

공급업체는 공급 품목의 교체부품의 가용성을 해당 물품 시리즈의 생산 중단일로부터 최소 10년간 보장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교체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도면을 보관한다. 이러한 보관 의무는 동 기간의 종료 및 호이트와의 서면 합의 이후에 소멸한다. 공급업체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거절할 수 있다.

4. 가격, 위험의 이전 및 지급조건

4.1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구속력을 갖는다. 가격은 포장을 포함하여 인코텀즈2010(Incoterms 2010)에 따른 지정인도장소 인도 조건(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한다. 주문서 상 명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격이다.

4.2 청구서는 주문서 상의 주문번호를 적어 주문서에서 명시된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주문서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면 해당 청구서는 지급되지 않고 공급업체에게 반송되며, 호이트는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대해 책임이 없다. 주문서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청구서가 발행되어야 하고, 청구서는 주문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선금금, 중도금, 잔금은 각기 청구서에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용역이 제공된 경우, 공급업체와 호이트가 서명한

업무일지(보고서)가 청구서에 편철되어 있어야 한다.

4.3 청구서에 대한 지급은 물품의 인도시로부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대한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4.4 물품에 대한 위험은 인도 호이트 또는 그 대리인이 물품을 물리적으로 인수하는 시점에 이전된다

5. 인수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호이트의 정식 인수가 필요하다. 인수검사 실시 장소는 공급업체의 공장 또는 서비스 수행 장소 중 호이트의 선택에 따른다. 호이트가 이의를 달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더라도 그것이 인수를 의미하거나 구성부분에 대한 인도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차 하자 관련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아니된다.

6. 배송

6.1 공급업체는 늦어도 해당 물품이 공급업체의 작업장에서 출발할 시점에, 물품의 발송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한다.

6.2 공급업체는 운송서류와 납품서 일체에 구매 주문 번호 및 호이트의 정확한 인도지 주소를 기재한다.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이에 기인하는 지연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3 호이트가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배송의 경우, 가장 경제적인 요율에 따라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호이트의 배송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6.4 배송에 관한 지시는 주문서에 명시된다.

7. 포장

7.1 공급업체는 배송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주문서 및 기타 요건을 준수하여 포장을 행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취급에 의해 물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2 해당 포장이 운송포장 또는 외부보호포장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급업체는 포장 사용 이후 추가요금 없이 이를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로 합의한다.

8. 하자 통지

호이트는 통상적 사업 과정에서 적절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인도받은 물품의 정확한 수량, 운송 중 파손 및 명백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호이트는 하자 발견 시 5영업일 내에 이를 공급업체에게 통보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는 하자에 대한 통지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다. 호이트는 배송된 물품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9. 하자 책임

9.1 공급업체는 리스크 이전 시점 현재, 주문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하자 및 권리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없음을 호이트에게 보증한다.

9.2 호이트가 공급예정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의도된 용도와 사용장소를 공급업체에 알린 경우, 공급업체는 물품 및 서비스가 해당 용도 및 사용장소에 적합함을 보증한다.

9.3 하자 또는 권리 관련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호이트는 하자가 존재하는 대상 전체에 대해 법률 상담보책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9.4 원칙적으로 호이트는 적절한 구제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다. 공급업체가 호이트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하자 보수 또는 대체물 인도

등의 후속 구제조치를 즉시 개시하지 않으면, 호이트는 (특히 위험을 방지하거나 손해를 회피/최소화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구제조치를 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공급업체에 의한 하자의 보수 시도 또는 대체물 인도가 실패하거나 공급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9.5 하자 발생 이후 보수작업 기간 중에 철거 및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인도 과정의 일부로서 인도 품목을 설치할 의무가 공급업체에게 있거나 하자에 대한 책임이 공급업체에게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상기 비용과 함께 대체품의 현장 왕복 운송비를 부담한다.

9.6 물품/서비스와 관련된 제3자 권리 침해로 인하여 호이트에게 제3자로부터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서면요청에 따라 조건없이 상기 청구로 인한 손해를 호이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급업체는 호이트를 상대로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호이트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9.7 (호이트가 기망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자 관련 청구는 해당 물품이 이행지에서 수령되었거나 해당 용역이 인수된 시점으로부터 3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공급업체가 대체품 제공을 통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교체후 물품에 대한 하자청구 기간은 대체품의 인도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10. 소프트웨어

호이트는 계약 상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되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 상 인도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다. 공급업체는 소프트웨어 발송되는 시점 또는 호이트 또는 그 최종 소비자의 시스템에 설치되는 시점 이전에, 최신의 통상적인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및 기타 컴퓨터 맬웨어를 탐지하고 제거한다. 소프트웨어 조달에 있어서는 <http://www.Voith.com>에 게시된 추가적 구매조건이 적용된다.

11. 품질보증

11.1 공급업체는 예컨대 DIN EN ISO 9001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등 적절한 품질보증시스템을 사용하여 자신의 물품의 품질을 계속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호이트가 요구한 기준 기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물품 생산 도중 및 직후에 품질 시험 및 확인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상기 검사 및 확인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11.2 호이트 또는 호이트가 지정하는 자는 물품의 품질과 공급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이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데 대한 증빙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그들은 물품의 품질 및 공급업체 및 그 하청업체가 실시하는 품질 시험/확인 노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할 권리, 검수할 권리 또는 공급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공급업체 또는 그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권리도 갖는다.

11.3 공급업체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성요소나 설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호이트에게(요청이 없더라도) 즉시 제13.3조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그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호이트의 서면동의가 요구된다.

11.4 공급업체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주요 일부를 하청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우선 이를 사전에 호이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청을 하는 때에는 호이트의 서면승인이 요구된다.

11.5 공급업체에게 공개된 호이트의 품질보증정책 및 공급업체와 체결된 품질보증계약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12. 물품 마케팅 요건 및 제조물 책임

12.1 공급업체는 자신의 등록된 사무소 또는 이행지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12.2 공급업체가 기계류에 관한 EC지침, 압력용기 지침, EMC 지침 등 최종 출시에 관한 유럽지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지침에 규정된 관련 보건안전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기로 하며 또한, 요구되는 문서들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계류에 관한 EC지침 2006/42/EC에 따른 부분완성 기계류의 경우, 공급업체는 호이트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기계류에 대한 EC지침 부록 II B에 따른 편입확인서(확대편입 확인서)를 호이트에게 제공하고, 또한 기계류에 관한 EC지침 부록 I의 제1.7.4조에 따른 사용지침을 제공한다. 공급업체는 호이트가 요청하는 경우 호이트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체가 작성한 리스크평가서를 호이트에게 제출하거나 호이트가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3 공급물품 이외의 물건 또는 신체 상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공급업체가 책임이 있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호이트를 상대로 청구가 제기될 시, 손해발생원인이 공급업체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했고 공급업체 자신이 제3자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는 한, 공급업체는 조건없이 호이트를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보호하고 면책시킬 의무가 있다.

12.4 공급업체는 제12.3조에 의한 책임의 일부로서 호이트의 경고 또는 리콜 비용이나 이와 관련하여 호이트에게 발생하는 경비를 변상할 의무도 있다. 가능하며 합리적인 경우, 호이트는 공급업체에게 수행예정인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통보하고 공급업체와 협의를 실시한다. 본항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여타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5 공급업체는 개별 청구 당 보상금액을 최소 1백만 유로로 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호이트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13. 직장 안전, 환경 보호 및 분쟁광물

13.1 공급업체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품 및 서비스가 호이트의 현장 기타 이행지에서 적용되는 환경보호, 사고예방 및 산업안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공급업체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DIN EN ISO 14001 또는 유사 시스템 등에 따른 관리 시스템을 수립한다. 필요할 경우 호이트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공급업체의 사업소에서 감사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13.2 공급업체는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 EU 화학물질 규정 REACH(EU 규정 1907/2006호)의 요건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호이트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인도 품목에 대하여 REACH 규정의 체계 내에서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다.

13.3 또한 공급업체는 응용분야 물품에 대하여 REACH 규정 부속서 1 내지 9, 이사회 결정 2006/507/EC호(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톱홀름 협약,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EC 규정 1005/2009호, 국제 자동차 신고물질 목록(GADSL) 및 RoHS 지침(2002/95/EC))에 명시된 물질을 함유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위 모든 규정은 최신 규정을 의미한다.

13.4 인도 품목에 REACH에 명시된 고위험물질 후보 목록(SVHC 목록) 등재 물질이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기로 약속한다. 이는 과거에 등재되지 않았던 물질이 인도 기간 중에 상기 목록에 추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인도 품목은 석면, 살생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3.5 인도 품목에 제13.3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 식별번호(예: CAS 번호) 및 현행 안전데이터팅세를 명시한 서면을 통해 인도 전에 호이트에게 이를 통지한다. 상기 인도 품목의 공급에는 호이트의 별도 승인이 요구된다.

13.6 공급업체는 자신의 공급 체인에 대한 확인과 자신의 조직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공고민중광화국 및 그 인접국에 생산된 켈립사이트 탄탈석(콜탄), 주석, 철망간 중석, 금 및 그 파생물 등) 미합중국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 및 제1504조에 정의된 분쟁광물이 호이트에게 인도될 물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13.7 공급업체는 자신의 상기 규정 미준수에 관한 일체의 책임에 대하여 호이트를 면책하고 자신의 상기 규정 미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호이트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13.8 또한, 공급업체는 폐기물 및 잔류물 처리에 대한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호이트가 물품을 어떻게 취급, 보관 및 처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4. 소유권 유보, 모델, 도구 및 비밀유지

14.1 공급업체의 소유권 유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14.2 호이트가 공급업체에게 원재료, 부품, 용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호이트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부품의 가공 또는 변형은 호이트를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 이처럼 호이트에게 권리가 유보된 물품이 호이트 소유가 아닌 여타 물품과 함께 가공되는 경우, 호이트는 가공 시점의 타 가공 물품에 대비한 호이트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새로운 품목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14.3 공급업체가 호이트의 비용 부담으로 제작하는 각종 모델 및 도구는 그에 대한 대금지급을 기점으로 호이트의 재산이 된다. 공급업체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취급하고, 주문된 물품의 생산 목적으로만 이를 사용하고, 호이트의 재산이라는 표시를 취하며, (가능한 경우) 공급업체의 기타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고, 공급업체의 비용 부담 하에 화재, 수재, 도난, 분실 및 기타 손해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부보한다. 공급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기 모델 및 도구 등을 적시에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상기 모델 및 도구를 이용하여 제작된 부품의 재판매는 호이트의 명시적 서면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14.4 호이트가 주문된 물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급업체에게 각종 형태로 위탁하는 호이트의 문서, 도면, 설계도 및 스케치와 기타 노하우 등은 호이트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이는 호이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공급업체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취급하고, 계약이행을 위하여 이를 필요로 하며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접근시키고,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으며, 주문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을 만들고, 물품인도 혹은 서비스 완료 즉시 사본을 포함한 문서 일체를 호이트에게 반환(혹은 호이트의 선택에 따라 파기)하기로 약정한다.

15. 데이터 보호

호이트는 법적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해당인으로부터 동의된 경우, 공급업체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저장, 사용 및 이전할 수 있다. 해당인은 자신과 관련하여 저장된 개인 데이터와 그 처리 및 사용 목적에 관한 정보 취득권을 보유한다. 해당인의 정보 요청 또는 추가적 권리 행사 내용은 항상 호이트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국가 법률 체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16. 물품 원산지 및 수출 통제

16.1 호이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발급일 현재 유효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공급업체는 호이트에게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장기적 공급자선언이 사용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구매 주문 수락 시에 원산지 지위의 여하한 변경사항을 호이트에게 자발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별관세대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항상 거래문서에 실제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16.2 공급업체는 독일, 유럽 및 미국 법규와 기타 관련 수출 및 세관 요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공급업체의 물품이 (재)수출될 때 적용될 수 있는 인허가 의무를 호이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급업체는, 자신의 견적서에 해당 정보가 이미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문 확인서 및 모든 송장에서 물품의 해당 항목에 다음 정보를 기재한다: 상품코드, 현행 EC 이중용도규정 또는 수출목록 파트 I(독일 대외무역및지급규정 부속서 "AL")의 AL 번호(수출목록번호)와 미국 수출 법규에 의한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16.3 공급업체는 호이트의 요청 시, 추가 대외무역 데이터 일체 및 그 구성요소를 호이트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제 16.1 조 및 제 16.2 조에 규정된 데이터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호이트에게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다.

16.4 상기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 호이트는 기타 청구권에 영향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7. 해제 및 해지권

호이트는 법 상 권리에 더하여, 공급업체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거나 그러한 상황의 발생으로 물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급업체가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호이트는 공급업체가 호이트의 경쟁사의 지배력 행사 대상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8. 기업가적 책임, 행동강령 및 최저임금

18.1 공급업체는 기업가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환경보호법, 노동법 관련 규정 및 직원의 건강 관련법의 법률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며, 물품 생산 및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업체는 주문 수락 시에 어떤 형태의 뇌물수수 및 부패행위도 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는 <http://www.Voith.com>에서 확인 가능한 "호이트 행동강령"을 유념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상기 규정에 포함된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18.2 특히 공급업체는 일반 최저 임금과 관련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고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하청업체에게 부과하기로 약속한다. 호이트의 요청 시에 공급업체는 상기 약속의 준수에 관한 증빙을 제공한다. 상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제3자의 청구에 대하여 호이트를 면책하고 이와 관련하여 호이트에게 부과된 벌금을 변상하기로 약속한다.

19. 총칙

19.1 계약 이행을 위하여 호이트 또는 호이트 관계회사의 구내에서 근무하는 자는 각 근무규정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근무지에서 상기인에게 발생하는 사고가 당사의 법정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은 배제된다.

19.2 구매관련 질의, 구매 주문서 및 관련 서신을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급업체는 호이트가 사전에 서면으로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이트와의 사업관계를 이용하거나 호이트를 추천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19.3 호이트의 명시적 서면승인이 없는 공급업체는 계약과 관련된 청구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다.

19.4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섭의사법 원칙은 제외)에 따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19.5 공급업체가 화물을 선적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호이트의 사업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양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 및 재판권을 갖게 된다. 또한 호이트는 공급업체의 사업지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6 본 구매조건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무효화 되는 경우, 이는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